

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

고

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총무위원회(2005. 2. 2)

1. 심사 경과

가. 2004. 12. 14 : 사천시장제출

나. 2005. 1. 26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73호)

다. 2005. 2. 2 : 제93회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(세무과장 강대평)

가. 제안 이유
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(건설교통부령 제399호 2004. 4. 21 개정 공포)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할 경우, 종전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던 것을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-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수수료를 정함
 - 1건당 5,000원

다. 관계 법령

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(건설교통부령 제399호, 2004. 4. 21)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, 별지서식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를 1건당 최저 2,000원에서 최고 30,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음.
- 본 조례에서 우리시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수수료를 1건당 5,000원으로 정한 것은 인근 시·군별 수수료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남도가 제시한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수수료 책정기준(2004. 5. 1)에 의하여 정하였으며 조례개정을 완료한 도내8개시(밀양시 제외)모두 5,000원으로 정하였음.
- 본 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 2004. 11. 15 ~ 12. 6까지 입법예고한바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 없음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음